

회의진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목적 및 경위

1. 개정 목적 및 경위

「국회법」에 규정된 청가 제도를 차용하여 본회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된 대리인 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함.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등 현행 회칙·세칙·규칙에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관행적으로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선임을 인정함. 타 대학 총학생회에서도 유사한 대리인 제도가 존재하며, 해당 대학 총학생회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POSTECH 총학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5조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제61조제2항,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1조제3항) 현행 제도상에서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개회를 포함한 회의의 의사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회의체 운영 요건·형식의 완비와 대리인의 여부는 무관함. 다만,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소속 기구의 안건을 설명하고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나은 운영이라고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인정된 대리인 제도를 유지하고 명문화함.

대리인 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명문화하기 위함.

선출직 대표의 회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해 발언하는 등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회의 중 구성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등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소속 회원 중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이 당연함. 그 중에서도 선출직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여서는 선출직이거나 선출직선출부터 임명받은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대리인의 범위를 정함.

2. 조문별 개정 목적 및 경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청가) 1.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기구운영세칙 제7조의 출결 기준을 만족한 경우에는 해당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의 출결을 인정한다.

	<p>2. 대리인은 소속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선임하여야 한다.</p> <p>3. 그 밖에 청가 및 청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p>
--	--

목적 및 경위	<p>1. 「국회법」에 규정된 청가 제도를 차용하여 본회에서 관행적으로 인정된 대리인 제도를 명문화하기 위함.</p> <p>가. 학생회칙 및 의결기구운영세칙 등 현행 회칙·세칙·규칙에는 대리인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관행적으로 대의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대리인 선임을 인정함.</p> <p>나. 타 대학 총학생회에서 유사한 대리인 제도가 존재하며, 해당 대학 총학생회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POSTECH 총학생회 「전체학생대의원회의규칙」 제5조 등,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칙 제61조제2항,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칙 제41조제3항)</p> <p>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의사·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개회를 포함한 회의의 의사진행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회의체 운영 요건·형식의 완비와 대리인의 여부는 무관함. 다만, 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히 참석하지 못하였을 때 소속 기구의 안건을 설명하고 입장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나은 운영이라고 판단하여 관행적으로 인정된 대리인 제도를 유지하고 명문화함.</p> <p>2. 대리인 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고 명문화하기 위함.</p> <p>가. 제2항을 통해 대리인 선임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p> <p>나. 선출직 대표의 회의에서 소속 기구를 대표해 발언하는 등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회의 중 구성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등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소속 회원 중에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이 당연함.</p> <p>다. 그 중에서도 선출직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는 선출직이거나 선출직 선출부터 임명받은 직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아 자치기구 자치규칙으로 정하는 직을 가진 사람으로 대리인의 범위를 정함.</p>
--------------------	--

<신 설>	<p>제17조(청가서의 제출)</p> <p>대의원 또는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 및 선임한 대리인을 기재한 청가서를 사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목적 및 경위	<p>1. 청가서의 제출을 규정하기 위함.</p> <p>가. 제17조를 통해 청가서의 제출과 제출처(의장)를 명시함.</p>
--------------------	--

	<p>나.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2조를 차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2조(청가서의 제출)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div> <p>2. 청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p> <p>가. 제17조를 통해 청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내용을 명시함. 해당 내용으로 청가 이유, 청가 기간, 선임한 대리인을 규정함. 이는 현행 청가서 서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p>
--	---

<신 설>	<p>제18조(청가의 허가)</p> <p style="text-align: center;">구성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p>
목적 및 경위	<p>1. 청가 허가의 주체를 규정하기 위함.</p> <p>가. 제18조를 통해 청가 허가의 주체를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도와 같이 의장이 허가하는 것으로 규정함.</p> <p>나.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3조를 차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3조(청가의 허가)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이를 허가한다.</p> </div>

<신 설>	<p>제19조(청가 허가의 통지)</p> <p style="text-align: center;">의장은 구성원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구성원과 그 구성원이 소속하는 회의체에 통지한다.</p>
목적 및 경위	<p>1. 청가 허가 시 안내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p> <p>가. 제19조를 통해 청가 허가 시 안내하는 절차를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도와 같이 의장이 허가한 후에 청가서 제출자(구성원)과 회의체에 통지하는 것으로 규정함.</p> <p>나.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4조를 차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제4조(청가허가의 통지) 의원은 의장의 청가가 허가된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하는 위원회에 통지하고 허가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원에게 통지한다.</p> </div>

<신 설>	<p>제20조(청가 허가의 실효)</p> <p style="text-align: center;">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전학대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p>
-------	---

목적 및 경위	<p>1. 청가의 허가가 효력을 발하는 범위를 규정하기 위함.</p> <p>가. 제20조를 통해 청가의 허가가 효력을 발하는 범위를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도와 같이 청가의 허가를 얻은 구성원이 그 청가의 기한 내에 회의체 출석한 때에는 그 시점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함.</p> <p>나. 예를 들어, 부득인 사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여 청가 허가된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어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폐회 전에 회의장에 출석한 경우에는 청가 허가의 효력은 상실되며, 그 출석 시점 이후로는 중앙운영위원 본인이 해당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봄. 즉, 선임된 대리인과 회의 중간에 교체하는 것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를 명문화함.</p> <p>다. 「국회의원청가및결석에관한규칙」 제6조를 차용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제6조(청가허가의 실효) 청가의 허가를 얻은 의원이 그 청가의 기한내에 국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의 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p> </div>
--------------------	--